

발급번호:

축산물(소)등급판정확인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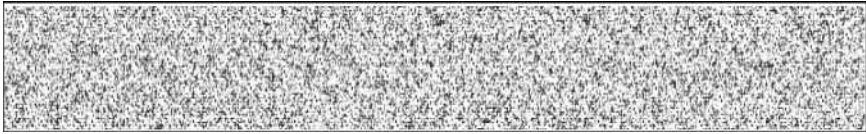
(QR이미지)

「축산법」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축산물품질평가사 소 속:

성 명: (인)

신청인	성명			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			
	업소명				업태유형			
	주소							
도축장	업체명				등급판정일		년 월 일	
	소재지							
도체번호	이력번호	품종	성별	중량(kg)	등급			
					육질 (근내지방도)	육량 (육량지수)		
계: 두								
납품내역	업태유형	납품처명		부위명		중량(kg)		
품질평가원 원장 인								

발급 횟수: 건 발행일: 년 월 일

- ※ 이 확인서 내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(www.ekape.or.kr) “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” 코너를 이용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- ※ 납품내역은 「축산법 시행규칙」 제45조제4항에 따라 등급판정신청인 또는 매수인이 해당 축산물을 학교나 음식점 납품 등의 사유로 추가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.
- ※ 근내지방도는 육질 1++등급의 소 도체에만 표시됩니다. 다만, 수출용의 경우에는 육질 1+등급 이하에도 표시됩니다.
- ※ 등급판정 결과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축산물품질평가원 고객센터(044-410-700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